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 월 13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조례 제2250호

붙임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여수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 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 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 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9.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지원)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